

# 전북자치도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는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구매·가공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수요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4. 1.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 각 사업별 지원 규모와 일정 등은 사업별 특성,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안내되는 공모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구매 및 가공 비용 지원을 통해 디지털 기반 데이터 거래 활성화 촉진
- 사업명 :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 지원규모 : 총 사업예산 126백만원
- 사업기간 : 2025. 5. 1. ~ 2025. 10. 31.(6개월)
- 지원대상 :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도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등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 1인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 제외대상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 체납 기업

※ 상기 지원 규모 및 내용은 향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지원 세부내용

- 사업내용 :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른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 지원
  - (데이터 구매) 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서비스·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구매 비용 지원
  - (데이터 가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분석·가공이 필요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서비스·제품 개발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사업규모) 데이터 구매 6건, 데이터 가공 3건

사업명	세부지원명	사업기간	지원금액	지원수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	데이터 구매	2025. 5.~10. (6개월)	기업당 5백만원 이내	6개社
	데이터 가공		기업당 32백만원 이내	3개社

- (수요·공급기업 매칭) 데이터 가공 지원의 경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매칭을 통한 세부 사업계획 고도화 및 서비스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 판매·가공 공급기업 리스트’를 참고하여 사전 매칭 후 사업 지원 또는 사업 선정 후 전북TP-수요-공급기업 간 매칭을 통해 주요내용 협의·협약·운영 가능
- (데이터 판매·가공 공급기업 Pool)

번호	기업명	지역	데이터판매	데이터가공	비고
1	(주)데이터몬드	전주시	○	○	
2	(주)비도스	군산시	○	○	
3	(주)성민소프트	전주시		○	
4	(주)세림씨앤에스	군산시		○	
5	(주)센소프트	전주시		○	
6	(주)씨어스	전주시		○	
7	(주)애드아임	전주시		○	
8	(주)에스엠해썬	익산시	○	○	
9	(주)에픽모바일	전주시	○	○	
10	(주)엠에이치소프트	전주시	○	○	
11	(주)크리	익산시	○	○	
12	(주)플렉소설시스템즈	전주시		○	

※ 전북자치도 데이터 판매 공급기업의 데이터나 데이터 바우처 포털 내 데이터 상품 등에서 데이터 구매

## □ 추진절차

### ○ 데이터 구매



## ○ 데이터 가공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기간 : 2025. 4. 1.(화) ~ 2025. 4. 1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jelee@jbtp.or.kr)
- **유의사항** : 데이터 구매·가공사업 중복 지원은 접수 불가, 중복 시 모든 신청 건 무효 처리
- 신청서류

번호	제출서류 목록	비고
1	지원사업 신청서	별첨(붙임1)
2	발표자료 ※ 발표자료는 15분 내외 분량의 PPT, PDF 파일 모두 제출	자유양식
3	데이터 구매 사전 협의서	별첨(붙임2-1)
4	데이터 구매 견적서	별첨(붙임2-2)
5	데이터 가공 사전 협의서 ※ 수요-공급기업 간 매칭이 안되어 있는 경우 선정 후 수요-가공 매칭 기업 간 협의 및 제출	별첨(붙임3-1)
6	데이터 가공 서비스 견적서	별첨(붙임3-2)
7	참여의사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서	별첨(붙임4)
8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별첨(붙임5)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붙임6)
10	기업확인·인증서(예 : 중소기업확인서 등)	-
11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 가능 서류 (예비진단 보고서, 신용체크보고서 등)	-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3	사업자 등록증	-
1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3개년(*'22~'24년),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

□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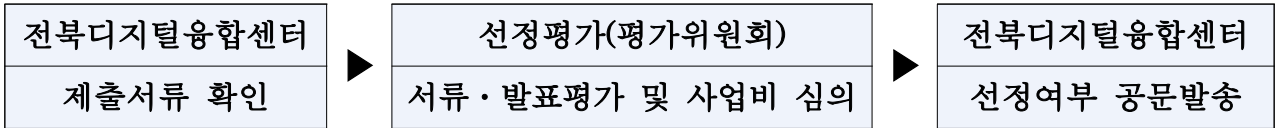
- 사업관련 문의처 및 접수처(이메일)
  - 전화 : 063-226-9079 / 이메일 : jelee@jbtp.or.kr
  - ※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선정 및 평가, 지원내용 등 상담 지원
  - ※ 메일 접수 시 제목 : [기업명]사업명\_세부사업(ex: [㈜전북TP]데이터 활용기업\_데이터구매)
  - ※ 폴더 내 파일제목 : 연번.서류명\_회사명(ex: 01.지원사업 신청서\_전북TP)

## □ 평가방법

- (평가절차) 신청서류 기반 사전검토 후 심사 절차에 따라 진행

※ 제출서류 누락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지원사업 평가 절차 >



- (사전검토) 서류검토(서류 미비 및 요건 미충족 시 평가 대상 제외)
  - ※ 중소기업 확인서, 채무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조건 해당 여부(부정당사업체, 휴업 중인 기업, 세금체납 기업)
- (평가방향) 데이터 구매·가공 활용 서비스의 활용성 및 시장성, 실현 가능성, 성장성 등을 평가
- (평가위원회) 사업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 구성(이해관계자 제외)
  - ※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접수 건수에 따라 평가위원회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운영
- (평가방법) 서류,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 최소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에 대해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
  - 고득점 기업부터 우선 지원
    - ※ 발표는 총 25분 이내(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로 진행하고 실무책임자가 발표(실무책임자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 참여 인력이 발표 진행)
    - ※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필요시 발표영상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비대면 평가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 동점 과제는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활용성 및 시장성', '지속성 및 성장성' 항목 순 고득점 과제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분류
- 협약 체결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를 지원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AI바우처 지원사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사 사업(동일한 개발 과제 내용 등)을 수혜 또는 추진 중인 기업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 시 평가 단계에서 제외됨(사전검토부터 대상에서 제외됨)

- (평가기준) 데이터 필요성,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가치창출 효과 등 평가

< '데이터 구매'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재무상태 (10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등 기업신용등급평가
기업 현황 (10점)	○ 수요기업 데이터 산업 관련 주요 실적
사업 이해도 (25점)	○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계획의 독창성 및 혁신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0점)	○ 사업 추진을 위한 데이터의 역할 및 중요성 ○ 거래조건의 부합성 및 구입 비용 편성의 적정성
활용성 및 시장성 (15점)	○ 제품·서비스의 가치 창출 및 활용성 ○ 시장진출 계획 또는 가능성 등
지속성 및 성장성 (10점)	○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운영 및 고도화 방안 ○ 성장 가능성(scale-up)

< '데이터 가공'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재무상태 (10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등 기업신용등급평가
기업 현황 (5점)	○ 수요기업 데이터 산업 관련 주요 실적
사업 이해도 (15점)	○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계획의 독창성 및 혁신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0점)	○ 사업 추진을 위한 데이터의 역할 및 중요성 ○ 데이터 가공 서비스 적용 및 활용 전략 혁신성 ○ 데이터 가공·활용을 위한 연구인력 우수성
활용성 및 시장성 (20점)	○ 제품·서비스의 가치 창출 및 활용성 ○ 시장진출 계획 또는 가능성 등
지속성 및 성장성 (20점)	○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운영 및 고도화 방안 ○ 성장 가능성(scale-up)

### 3

## 민간부담금(사업비 구성) 및 사업비 지급 절차

□ 민간부담금 : 수요기업 민간부담금 최소 25%이상 매칭(공급기업 매칭금 없음)

- ※ 민간부담금 매칭 의무 : 현금은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며, 현물은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
- ※ 민간부담금 현물 인정 기준 : 참여인력 중 동일인이 타 과제 참여 시 현물인정 범위는 과제 총합 100%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불인정**

구분	민간부담금(25%) 中 현금부담 내용
중소·벤처기업	· 민간부담금 25%(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10%)
소상공인, 1인창조기업	· 민간부담금 25%(민간부담금 전체 현물 가능)

□ 사업비 지급 절차 : 지원사업별 사업비 지급 방식 및 시기가 상이함

※ 사업비 지급 세부절차는 협약이후 전담기관에서 추가 안내 예정

- (데이터 구매) 사업 협약 후 100% 사업비 지급
    - ①(기업부담금) 민간부담금(현금) 선금 입금(수요기업→공급기업)
    - ②(지원금) 협약 후, 세금계산서를 통한 지원금 100% 지급(전북TP→공급기업)
  - (데이터 가공) 사업 협약 후 사업비 50%, 중간점검 후 40%, 최종평가 후 10% 지급
    - ①(기업부담금) 민간부담금(현금) 선금 입금(수요기업→공급기업)
    - ②(1차 지원금) 협약 후, 지원금 50% 지급(전북TP→공급기업)
    - ③(2차 지원금) 중간점검 후, 지원금 40% 지급(전북TP→공급기업)
    - ④(3차 지원금) 최종평가 후, 지원금 10% 지급(전북TP→공급기업)
    - ⑤(세금계산서) 확정사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공급기업→수요기업)
- ※ (부가가치세) 최종 지원금의 10% 부가가치세 지급(수요기업→공급기업)

## 4 의무사항

### □ 사업일반

- 사업비 교부 대상 기업은 사업비(출연금 및 민간부담 현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함. 사업비 지급 전 민간부담금 지급 완료 증빙 제출 필요(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전액 반납함
- 과제진척현황, 비용집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 현장실사, 결과평가, 정산 등을 진행하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자료제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 자체 시험 결과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한 테스트 결과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
  - \* 단, 제출 테스트 결과서에는 성능목표, 학습/테스트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사용언어, 개발프레임워크 등이 제시되어야 함
- 수요기업은 과제 종료 시 납품받은 공급기업 솔루션에 대한 검수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
- 사업 성과(사업화 성공 여부, 매출액, 특허, 논문, 고용창출, 제품 상용화 등) 제고를 위한 기업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언론보도, 홍보 영상, 성과사례집 제작 등에 협조해야 함
- 데이터 가공 사업비 정산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추진하며, 데이터 구매 사업비 정산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추진한다.
- 주관기업은 ‘수요기업’ 에서 수행하며, ‘공급기업’ 은 참여기관 역할 수행
- 부정수급 등의 문제 근절을 위해 과제 추진사항, 연구인력 관리, 사업비 집행 등 3개 부문 나누어 사업 이행 실태조사 및 점검

## □ 개인정보보호

- 본 사업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時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 공급기업은 해당 시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 결과를 필요 시 제출
  -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붙임 6호)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특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선정기업(수요, 공급)은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사업 수시·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內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이슈 발생 時 사업결과서 內 데이터 전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時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 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 5 지원제한 및 제제사항

### □ 지원제한

- (수요기업 지원제한) 과년도 지원 수요기업은 지원 신청 불가
  - '24년 구매 지원 수요기업은 가공 부문 지원 신청 허용
  - '24년 가공 지원 수요기업은 구매·가공 지원 신청 불가
- (공급기업 매칭제한) 데이터 가공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데이터 활용에 균형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정 공급기업에 매칭이 쏠리지 않도록 공급기업 당 수요기업 1개 매칭 제한
  - (데이터 구매) 당해연도 최대 1건 매칭 가능
  - (데이터 가공) 당해연도 최대 1건 매칭 가능, 다양한 수혜처 확보를 위해 공급기업당 최대 3회(3개년) 까지 제한
- 신청 제외대상

1. 제출서류 미비한 기업
2. 요건 미충족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4. 부정수급 등 보조금법 위반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5. 최근결산 3년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6.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
7.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8. 최초신청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인 경우

## □ 부정수급 관련 제재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출연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인력) 간 담합에 의한 허위비용 또는 고액 청구
-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민간부담금을 대납해주어 수요기업 유치
-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게 사업비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
-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아 이용한 서비스를 본 사업을 통해 중복 청구
-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타 기관의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개발 비용을 청구한 경우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종결과물을 허위 보고한 경우
- 기타 지원사업의 취지 또는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부정수급 적발과 법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 사업참여가 영구적으로 제한되고, 사업비 환수 외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음
  -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클린 센터를 통한 신고접수,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고발조치 이행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별도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음
-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고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사업비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접수는 063-226-9079번 또는 이메일(jelee@jbtp.or.kr) 상시 신고접수

## □ 제재부가금 및 사업제한

-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참여기업(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공급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기업 Pool에서 제외

### <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천만원 이하	50%	3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천5백만원
5천만원~1억원	2천5백만원+5천만원 초과 100%	7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천5백만원 (2천5백만원 + 2천만원(5천만원 초과액))
1억원~3억원	7천5백만원+1억원초과 150%	2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백만원 (7천5백만원+1.5억원(1억원 초과 1.5배)) 3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백만원 (7천5백만원+3억원(1억원 초과 2억원의 1.5배))

### < 사업참여제한 기준(예시) >

구분	제한사유	제한기간
수요기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공급기업에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 정보제공 등으로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공급기업에 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3년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2년
공급기업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3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2년

\* 상기 제재부가금 및 사업 참여제한 예시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평점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
- 데이터 가공 사업비 정산위탁수수료는 **정산 대상자(수요기업)가 직접 부담**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 5천만원 미만	600천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천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천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천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천원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00천원
• 30억원 이상	2,100천원

## □ 지원사업별 민간부담금 매칭 참고자료

### ○ 데이터 구매

구분	민간부담금 매칭 의무		
	총 매칭율	현물	현금
중소기업	25%	90%	10%
벤처기업	25%	90%	10%
소상공인	25%	100%	0%
1인창조기업	25%	100%	0%

### ○ 총 매칭율 기준 현물 및 현금 부담금 기준을 나눔

- (현금 부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매칭율 지정

### ○ 소상공인, 1인창조기업은 민간부담금 전체 현물 가능

\* 예) (지원금)10,000,000원에 민간부담금 25%라 하면  $0.25 = \text{민간부담금} / (10\text{백만원} + \text{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3,400,000원(현물 3,060,000원, 현금 340,000원) 이상 매칭

\* 수식 계산 시 원단위 반올림

### ○ 데이터 가공

구분	민간부담금 매칭 의무		
	총 매칭율	현물	현금
중소기업	25%	90%	10%
벤처기업	25%	90%	10%
소상공인	25%	100%	0%
1인창조기업	25%	100%	0%

### ○ 총 매칭율 기준 현물 및 현금 부담금 기준을 나눔

- (현금 부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매칭율 지정

### ○ 소상공인, 1인창조기업은 민간부담금 전체 현물 가능

\* 예) (지원금) 40,000,000원에 민간부담금 25%라 하면  $0.25 = \text{민간부담금} / (40\text{백만원} + \text{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13,600,000원(현물 12,240,000원, 현금 1,360,000원) 이상 매칭

\* 수식 계산 시 원단위 반올림